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51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중 수사에 관한 공조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검사가 직접 공조자료를 수집하거나 압수·수색·검증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도 검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에 관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검사는 영장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의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며, 압수·수색·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

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하도록 한 규정을 요청하도록 정비함(안 제15조).
- 나.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 사법경찰관에게 공조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행 수사권한은 유지함(안 제16조).
- 다. 공조자료의 수집과 관계인 조사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고, 압수·수색·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라. 공조에 따른 법원의 처분 및 관할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사·기소 분리체계와 공소청 출범에 맞게 정비하고, 공조가 종료된 경우 수사기관의 장 등이 공조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마.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하려는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명하거나 요구하는”을 “요청하는”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검사장 등의 조치)”를 “(수사기관의 장 등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를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사법경찰관리”로, “명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검사 등의 처분)”을 “(사법경찰관리 등의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은”으로, “소유자·소지자(所持者)”를 “소유자·소지자”로, “공사단체(公私團體)”를 “공사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발급받은 영장에 의하여”를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공조에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그 증거물 등의 인도허가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법원에 인도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인도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 검사에게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로,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는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중 “검사”를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을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검사 등의 공조요청)”을 “(사법경찰관 등의 공조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을 “사법경찰관 또는”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 ----- ----- ----- ----- ----- -----.
1. 공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u>지방검찰청 검사장</u> (이하 “ <u>검사장</u> ”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 것	1. ----- ----- <u>수사기관의 장</u> ----- ----- ----- ----- ----- ----- <u>요청하는</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u>검사장 등의 조치</u>)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u>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u>	제16조(<u>수사기관의 장 등의 조치</u>) ① ----- <u>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사법경찰관리</u> ----- ----- ----- ----- ----- <u>하여야 한다.</u>
<신 설>	②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

제17조(검사 등의 처분) ①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할 수 있으며,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소지자(所持者)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공조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법경찰관리 등의 처분)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은 -----

-- 소유자·소지자 -----

공사단체-----

--.

② 사법경찰관은 공조에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판사에게 영장

②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경우
에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급받
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
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도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하여 제1항의 수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
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2
항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
증을 할 수 있다.

제18조(증인신문의 청구) 검사는
공조요청이 증인신문에 관계되
는 경우이거나 관계인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경우
----- 발부받
은 영장에 따라 -----.

<삭 제>

④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
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
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그 증거물 등의 인도허가 청구
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법원에 인도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인도허가
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증인신문의 청구) 사법경
찰관은 -----

---- 경우 검사에게 증인신문
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
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 청

	<u>구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소속 검사는 같은 사유 가 있는 경우 판사에게 증인신 문을 청구할 수 있다.</u>
제19조(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 류) <u>검사</u> 가 공조를 위하여 영장, 인도허가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 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공조 요청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 다.	제19조(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 류) <u>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소속 검사</u> ----- ----- ----- --.
제20조(관할 법원) ① 제17조제2 항에 따른 영장 청구와 제18조 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그 검 사가 소속한 <u>지방법원</u>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 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여 야 한다.	제20조(관할 법원) ① ----- ----- ----- ----- <u>지방법원</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u>명 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u> 또 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수집한 공조 자료 등 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① ----- <u>요 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u> ----- ----- ----- ----- ----- -----.

②・③ (생략) 제29조(검사 등의 공조요청) <u>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사법경찰관 등의 공조요청) <u>사법경찰관 또는 -----</u> ----- ----- ----- <u>한다</u>
---	---